

# 환경관련법(안) 입법예고

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행환경보전법의 분법화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(안)에 이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(안), 수질환경보전법(안), 대기환경보전법(안), 소음·진동방지법(안)이 입법예고 된바 있어 환경관련인 여러분에게 참고자료로 게재합니다.

## ◎ 환경청공고 제89-11호

### 유해화학물질 관리법(안) 입법예고

- 바. 유해물관리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관련교육을 이수토록 함.
- 사. 유해물 사업자의 업무를 성실히 이해하고 유해물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해물 안전관리협회를 두도록 함.

## ◎ 환경청공고 제89-12호

### 수질환경 보전법(안)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환경보전법과 독물및 극물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를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위해의 방지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등 유해화학물질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유해물 사업자의 범위에 종전의 제조업자·수출입업자·판매업자외에 유해물을 보관·수송하거나 업무상 일정규모 이상의 유해물을 취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(취급자)를 포함시킴.
- 나. 유해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.
- 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·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 그 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.
- 라.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 구명하고 필요한 기술검토 및 조사업무를 전담할 화학물질 심사단을 설치토록 함.
- 마.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유해물은 제조·판매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.

#### 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정이유

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,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규제 및 수질보전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##### 나. 주요골자

- (1)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.
- (2) 방지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업자가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환경청장이 지정·공고하는 공공기관에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함.
- (3)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

경청장에게 신고토록 함.

- (4) 환경청장이 시·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배출부과금 징수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중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.
- (5)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환경관리공단은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의 달성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공동처리키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공동처리구역내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.
- (6) 환경청장은 수질오염이 심화된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호소 및 그 수질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시·도지사로 하여금 호소수질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.
- (7) 시·도지사는 호소수질 관리구역내에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하여 호소수질보전 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시설의 설치 및 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.
- (8) 호소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심의를 위하여 환경청에 호소수질보전 대책위원회를 둠.

는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,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.

- 다.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배출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, 방지시설은 방지시설업자가 설계·시공하도록 함.
- 라. 환경청장은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, 배출기간, 배출량등으로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.
- 마.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도록 함.
- 바.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배출시설 관리인을 임명하고 환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.
- 사. 환경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생물의 생육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.
- 아. 환경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료사용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등에 대하여 종류별로 황의 함유기준을 정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업자별로 필요한 물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대상자 및 제조·판매자에게 연료의 사용제한 및 변경사용, 제조와 판매금지 명령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.
- 자.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내에서는 적합한 시설없이 악취 발생물을 소각하지 못하도록 하고, 환경청장은 생활악취 규제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악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.
- 차.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.
- 카. 자동차 제작자는 제작자동차 배출물질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, 자동차 표본에 대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작하여야 하고, 환경청장은 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.
- 타. 환경청장은 유효수명 기간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인증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제작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자에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자동차제작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결

### ◎ 환경청공고 제89-13호

# 대기환경 보전법(안)입법예고

- 1. 제정취지  
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관련 법령의 분법화 작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의 유지·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- 2. 주요내용  
가. 환경청장은 전국적인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당해 구역내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. 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측정망의 위치, 범위 및 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.  
나.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고, 특별대책지역내의 배출시설에 대하여

함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.

- 파. 환경청장은 결함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작자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의 20%에 상당하는 결함시정 충당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.
- 하.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하며, 환경청장은 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운행차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조기정비를 위한 벌금 부과 및 개선을 명하거나, 사용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- 가. 자동차 배출물질의 검사용기기를 최초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형식승인을 받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, 검사용기기의 사용자는 환경청장의 정도검사를 받도록 함.
- 나. 환경청장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연료용 첨가제의 제조·수입·판매와 첨가제를 사용한 연료의 제조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,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에게 첨가제로 인한 유해성 심사를 받아 등록하도록 함.

- 다. 환경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각종 소음진동기준의 측정, 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음·진동 측정기기를 최초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형식승인을 받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, 검사용 기기의 사용자는 환경청장의 정도검사를 받도록 함.
- 라. 공장 소음·진동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배출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, 방지시설은 방지시설업자가 설계 시공하도록 함.
- 마.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배출되는 소음·진동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기록을 비치도록 함.
- 바.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배출시설 관리인을 임명하고 환경청장에게 신고토록 함.
- 사. 폭약 사용으로 인한 소음·진동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약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.
- 아. 교통 소음·진동 규제지역내에서 시·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을 통제할 수 있고 동 지역내에서 사업대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음·진동 규제기준 이내로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함.
- 자. 자동차를 제작 하는자는 자동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,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, 환경청장은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함.
- 차.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동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하며, 환경청장은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거나 사용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
- 카. 환경청장은 주거생활의 정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정하고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방지시설 설치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동 소음원에 대한 규제근거를 명시함.
- 타. 환경청장은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주거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장을 설치 또는 관리 운영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.
- 파.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.

## ◎ 환경청공고 제89-14호

# 소음·진동 방지법(안) 입법예고

### 1. 제정취지

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음·진동방지법을 제정, 소음·진동 발생원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청장은 전국 또는 일부 필요한 지역의 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·진동 실태를 상시 측정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당해 구역내의 소음·진동 실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,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.